「금융-고용-복지 복합지원 추진단」 제2차 회의

# 금융 · 고용 · 복지 복합지원 방안

2024. 6. 27.

관계기관 합동

## 순 서

١.	추진배경	1
ΙΙ.	추진방향	2
III.	주요 추진과제	3
	1. 금융-고용 복합지원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3
	2. 금융-복지 복합지원	4
	3. 금융-기타 복합지원	6
	4. 고용-복지-금융 복합지원 및 인프라 강화 ·	7
۱۷.	' · 향후일정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0

## │. 추진배경

- □ (현황) 서민금융 이용자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서금센터)에서는 서민금융 제공 시 고용<sup>1</sup>· 복지<sup>2</sup>도 함께 지원 ☞ 금융-고용-복지 복합지원
  - ① (고용) 서금센터 직업상담사가 구직 희망 방문 고객 등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및 고용부 국민취업제도와 연계
  - ② (복지) 금융지원 대상 고객이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, 서금센터 방문 고객을 행정복지센터(지자체)로 연결
- □ (최근경과) 금융-고용-복지 복합지원 강화 필요성이 강조(민생 토론회 등)된 이후, 속도감 있게 부처 간 협업 진행
  - (금융위·고용부<sup>1.24일</sup>) MOU 체결, 금융-고용 복합지원\* 방안 발표
    - \* 1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 확대 / 2 온·오프라인 연계체제 구축 /
      - ❸ 서민금융 이용자 대상 연계 가능한 고용 지원제도 확대 /
      - ④취업자 대상 인센티브, 연체자 고용 재연계 등 환류 시스템 도입
  - (행안부·금융위<sup>4.29일</sup>) 협업과제 추진 조직(금융위 복합지원팀) 출범
  - (금융위·행안부·복지부·고용부 등<sup>5.7일</sup>) 「금융-고용-복지 복합지원 추진단」 1차 회의 진행, 금융-고용 外 복합지원 강화 방안 논의
- → 1차 회의 이후 유관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「금융·고용·복지 복합 지원 방안」을 마련했으며, 6.27일 추진단 2차 회의에서 대외발표
  - 향후 해당 방안을 적극 이행하고,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·발전

#### Ⅱ. 추진방향

- ◇ 분야별 주요 과제 추진 ☞ 금융-고용-복지 복합지원 강화
- (금융-고용) 「금융-고용 복합지원 방안<sup>'24.1.24. 발표</sup>, 적극 이행 + 신규 지원방안 발굴
- 2 (금융-복지) 서금센터 이용 고객의 복합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+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 확대
- ❸ (금융-기타) 서금센터 이용 고객의 불법사금융 대응 지원
- **4** (이프라) 서금센터 外 고용복지<sup>†</sup>센터 등을 통한 복합지원 제공 강화
- ➡ <sup>미시</sup>취약계층의 <mark>온전한 경제적 자립 및 경쟁력 향상</mark> 지원
  - + 거시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및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마련

#### < 기본 추진방향 >

#### ① 금융-고용

#### I. 복합지원 旣 발표 방안 이행

- ① 고용지원 연계 대상 확대
- ② 온 오프라인 연계 체제 구축
- ③ 연계 가능 고용 지원제도 확대
- ④ 환류 체계 구축

#### Ⅱ. 신규 지원방안 발굴

⑤ 금융 컨설팅 지원 대상 확대

#### 🛾 금융-복지

- 접근성 제고
- 신속 서민금융 상담 제공
- ② 직원 상호 교육 활성화
- Ⅰ. 복합지원 서비스 Ⅱ. 복지 혜택의 확대
- ∴ ① 복지 대상자에게 ┆ ③ 금융 정신건강지원 연계 확대·강화
  - ④ 서민금융 고객 대상 복지멤버십 가입 혜택 제공
  - ⑤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서민금융 정보 추가

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 및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마련

#### ❸ 금융-기타

####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

- ① 서민금융 상담자에게 법률 플랫폼을 통한 : 법률구조 지원
- ② 금감원-서금센터 간 양방향 전산 연계

#### 4 인프라

- 고용-복지 연계 및 기관 간 협력 강화
- : ① 업무 시스템 고도화
  - ② 고용-정신건강 연계 지원 강화
- : ③ 협업 교육 강화
  - ④ 통합시례관리 강화 및 협의체 상호참여 확대

#### Ⅲ. 주요 추진과제

## 1

## 금융-고용 복합지원

旣발표 방안(「금융-고용 복합지원 4대 방안」) 적극 이행 + 신규 지원방안 발굴

- ① (기존) 既발표 방안 차질 없이 이행 중<sup>고용부·금융위</sup>
  - ①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 확대
    - 서금센터 **오프라인 방문** 금융상품 이용자 중 **무소득·비정규소득자**에게 고용제도를 안내 중이며('24.4월~). '**24.6월**부터는 **온라인 연계**도 시작
  - ② 온 오프라인 연계 체제 구축
    - <sup>온라인</sup> **워크플러스 시스템**을 활용한 고용연계 진행('24.3월~), <sup>오프라인</sup> **상호 출장소** 적극 운영 및 확대 추진('24.6월 기준 금융→고용 18개 / 고용→금융 13개)
  - ③ 연계 가능한 고용지원제도 확대
    - 연계·안내 고용지원제도가 **1개** → **5개로 확대**\*되었으며('24.4월~), **연계 경로도 확대** (기존 '워크플러스'에 **서민금융 플랫폼 '잇다' 추가**, '24.6월~)
    - \*  $^{\dagger\dagger}$  국민취업지원제도 $\rightarrow^{igotimes}$  국민내일배움카드, 대학일자리+센터,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, 청년도전지원사업 추가
    - 한편, 정책금융 이용자는 **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기회 보장**('24.2월~)
  - ④ 인센티브 도입, 연체자 고용 再연계 등 환류 시스템 구축
    - **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자** 대상 햇살론유스 보증료 인하(0.5%p, '24.3월~) 등 **금융 인센티브 제공**과 더불어,
    - **정상 상환이 어려운** 정책금융·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고용지원 제도 再**안내**· 再**연계**(알림톡·유선상담)도 진행 중('24.4월~)
- 2 (신규) 신용·부채관리 컨설팅 지원 대상 확대<sup>금융위</sup>
  - (현행) 서금원은 신용·부채관리 컨설팅\*을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해서만 제공 중
    - \* 월 1회 전문가가 신용·부채 상태를 점검, 금융 비용 경감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 (완료자의 52.4%가 신용점수 상승/이용자에게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혜택 제공 중)
    - 그러나,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**신규 취업자**도 건전한 신용 생활 유지를 위한 **컨설팅 수요가 상당**한 상황
  - ➡ (개선) 컨설팅 대상에 정책서민금융 未이용 금융고용 연계자 추가

## 금융-복지 복합지원

서금센터 이용 고객의 복합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+ 혜택 확대

#### 가. 접근성 제고

- 보지 대상자에게 신속 서민금융 상담 제공<sup>금융위</sup>
  - (현행)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이음)을 통한 **지자체(복지**) → 서금센터(금융) 온라인 연계는 활발\*하게 진행중
    - \* 전체 지자체→유관기관 지원의뢰 건 중 **서금센터로 32.4%(5,836건) 의뢰**('23)
    - 다만, 금번 대책으로 복지→금융 연계가 보다 활성화되며 서민 금융 의뢰인 증가 시, 예약적체 등으로 적시대응에 어려움 우려
  - → (개선) 서민금융콜센터\* 내 복합지원 서비스 의뢰 건 전담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하여 신속한 상담 진행
    - \* 지자체에서 서금센터로 금융상담 의뢰 시 서민금융콜센터에서 기초 금융상담 실시 후 서금센터 전담 상담원 배정
- ② 금융-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상호 교육 활성화<sup>복지부·금융위</sup>
  - (현행) 지자체는 복지 전문성이 있으나 금융 전문성이 부족 하고, 서금센터는 금융 전문성이 있으나 복지 전문성 부족\*
    - \* 서금센터 상담직원 설문조사('23.10월) 결과 '명확하고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복합상담'은 휴면예금>채무조정>불법사금융>**복지연계**>취업연계 順
    - 복합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·서금센터의 **인적 역량 강화** 필요
  - → (개선) <sup>1</sup> 금융 → 복지 서금센터, 보건복지인재원 등을 통해 복지 공무원 대상 서민금융·채무조정 교육\* 활성화
    - <sup>❷ 복지 → 금융</sup> 서금센터 직원 대상 복지멤버십 가입 안내 등 복지 제도 관련 **온라인 교육 제공** 추진
    - \* 사회복지공무원 연수 내 '채무조정('21.3월~), 정책서민금융('24.3월~) 교육과정 운영 중

#### 나. 복지 혜택 확대

- ③ <del>금융-정신건강</del> 지원 간 연계 확대·강화<sup>복지부·금융위</sup>
  - (현행) 서금센터 방문 고객 중 자살위험군에 한해 정신건강 복지센터(복지부·지자체) 등을 통한 정신건강 상담 안내 중('18.6월~)
    - 한편, 복지부의 '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(만 19~34세 대상)'이 '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(연령제한 없음)'으로 확대되어, '24.7월부터 全연령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예정
  - → (개선) <sup>1</sup>서금센터→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대상자를 자살위험군 外 심리상담 필요 고객(국민)으로도 확대하고,
    - <sup>②</sup>심리상담 필요 고객 중 고위험군은 서금센터에서 정신건강 복지센터로 전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,
    - <sup>6</sup>서금센터를 통한 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홍보 강화
- 4 서민금융 고객 대상 <mark>복지멤버십 가입 안내 등 강화</mark>복지부·금융위
  - (현행) 복지부는 복지멤버십(맞춤형급여안내) 가입자에게 중앙· 지방의 복지서비스 89개를 맞춤형\* 안내 중
    - \* 멤버십 가입자의 소득·재산 등을 분석하여 복지서비스(사회보장급여) 추천
    - 서금센터 이용 고객 중 복지멤버십 가입으로 자립에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가능성이 높은 고객\* 규모가 상당하나,
    - \* 총 유관기관→지자체 복지의뢰 건 중 **서금센터에서 90.7%(42,401건) 의뢰**('23)
    - 해당 고객의 복지멤버십 가입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등 부족
  - → (개선) 서금센터 방문 고객에게 복지멤버십 가입을 안내(권유)하고, 가입이 확인\*된 자에게는 금리(보증료) 인하 인센티브 제공
    - \* ('24년) 가입 확인서 수기 확인 → ('25년) 복지부-서금원 전산 연계로 확인 추진

- [5]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서민금융 정보 추가<sup>복지부·금융위</sup>
  - (현행) 복지부에서 활용 중인 위기가구 발굴 정보(現 45종)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우려가 큰 <sup>●</sup>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자와 <sup>②</sup>연체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 정보 등 未포함
  - → (개선)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<sup>●</sup>상대적 취약차주의 서민금융
    거절 내역 등\*과 <sup>②</sup>연체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 여부\*\* 추가
    - \* 취약차주(신용점수 하위 20% 등)이면서, 상환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가 거절된 차주(단,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)
    - \*\* 연체자 동의 없이 제공되는 정보로, 사회보장급여법령 개정 후 제공 추진
  - ※ [상대적 취약차주 서민금융 거절내역] 시스템 연계('25년) 전까지는 문서로 정보 제공 [연체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 여부] 사회보장급여법령 개정 후 정보 제공 추진

## 3 | 금융-기타 복합지원

불법사금융 피해 서민금융 이용자 등에 대한 실효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

- □ 통합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한 법률 지원<sup>법무부·금융위</sup>
  - (현행) 서금센터에서는 정책서민금융 상담자가 원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이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 신청 방법을 단순 안내(문자 등) 중\*
    - \* [例]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확인될 경우,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링크 발송
    - 안내를 받은 상담자가 법률구조 서비스를 실제 신청하지 않을 경우, 해당 상담자가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한계
  - → (개선) 통합 법률구조플랫폼(법률구조공단, '25년 구축예정)을 활용해 정책서민금융 상담자에게 적극적으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
  - ※ [例] 정책서민금융 상담자(甲씨)의 불법사금융 피해 확인 → 해당 상담자(甲씨) 정보를 서금센터가 직접 통합 법률구조플랫폼에 입력(상담자 동의 필요) → <u>법률구조공단에서 甲씨에게 연락</u>하여 법률구조 서비스 상담·제공

## ② 금감원-서금센터 간 양방향 전산연계<sup>금융위·금감원</sup>

- (현행) 서금센터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(우려)<sup>\*</sup> 상담자에게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신고를 적극 안내<sup>\*\*</sup> 중
  - \*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(건): 9,918('21년) → 10,913('22년) → 13,751('23년 / '21년 比 +39%)
  - \*\* 소액생계비대출 방문 상담건 중 10,191건에 대해 불법사금융 예방 안내
  - 다만,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선, 단순 안내 이상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
- → (개선) 금감원과 서금센터 간 양방향 상담 연계\*를 전산화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호지워 체계 구축
  - \* (금감원→서금센터) 서민금융 상담 희망 시, 불사금 피해자 인적사항 및 관련 정보 (서금센터→금감원) 불사금 피해 확인 시, 상담자 인적사항 및 피해 관련 정보

## 고용-복지-금융 복합지원 및 인프라 강화

고용복지<sup>+</sup>센터에서 수요자 맞춤형 고용·복지·금융서비스 통합 제공 및 참여기관 간 협력 내실화

- ① 고용-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 시스템 고도화<sup>복지부·고용부</sup>
  - (현행) 고용부(워크플러스) ↔ 복지부(행복이음) 간 연계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, 업무지원 기능 중심이며 복합지원 업무 구현에 한계
  - → (개선) <sup>1</sup>위크플러스·행복이음 기능 개선·연계 강화\*로 서비스 신속 제공, <sup>2</sup>연계 서비스 관련 지침\*\* 개정
    - \* 상세 상담정보 공유, 고용↔정신건강 서비스 참여자 의뢰 절차 간소화(전산화) 등
    - \*\* 워크플러스의 행복이음 의뢰 기능 관련 내용을 고용복지<sup>+</sup>센터 운영 지침에 추가

## ② 고용-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지원 강화<sup>복지부·고용부</sup>

- (현행) 고용복지<sup>+</sup>센터 내 설치된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구직자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<sup>\*</sup> 중이나, 해당 서비스 수요는 지속 증가 중
  - \* 보다 전문적인 정신건강 지원필요 대상자는 지자체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거나, 지역 센터간 자체 협약 등을 통해 출장상담 등 지원 중
  -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한 상담자에게 취업지원 연계 시, 재활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
- → (개선①) 고용복지<sup>+</sup>센터 구직자 대상 정신건강 지원 강화<sup>\*</sup>
  - \* 1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접 연계 등 지원 강화
    -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정신건강 교육, 캠페인 등 제공 활성화
    - ❸ 고용복지<sup>+</sup>센터에서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뢰서 직접 발급
- → (개선②)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에게 고용지원 제도\* 연계
  - \* 국민취업지원제도, 청년도전지원사업,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,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,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
- ③ 고용-복지 서비스 연계 <u>협업 교육 강화</u>복지부·교용부
  - (현행) 고용복지<sup>+</sup>센터, 지자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<sup>\*</sup>가 이루어지고 있으나, **각 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지원** 등은 **부족** 
    - \* ① 고용복지<sup>\*</sup>센터(102개 중 83개소)에 지자체 복지담당자 입주하여 복지 상담·연계 중, 미입주 고용복지<sup>\*</sup>센터 및 지자체는 워크플러스와 행복이음 시스템 통해 연계 중 ②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출장상담 등 지원 중인 고용복지<sup>\*</sup>센터는 20개소
  - → (개선) <sup>① 고용→복지</sup> 고용복지<sup>+</sup>센터 직원 대상 복지제도 교육 제공 및 고용복지<sup>+</sup>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복지멤버십 가입 안내
     ② 복지→고용 복지분야 교육과정 내 고용지원제도 교육 제공

- 4 통합사례관리 강화 및 <mark>협의체·회의 상호참여 확대<sup>복지부·고용부·금융위</sup></mark>
  - (현행) 고용부(고용복지<sup>+</sup>센터)와 복지부(지자체)에서 각각 사례관리 협의체<sup>\*</sup>를 운영하고 있으나, 협의체 간 인적 교류는 제한적
    - \* [고용복지<sup>†</sup>센터] 사례관리협의체 / [지자체] 읍·면·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(일반 사례관리), 시·군·구 희망복지지원단(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해결 어려운 고난도 사례 논의) 등
  - → (개선) 고용복지<sup>+</sup>센터 사례관리 협의체, 지자체 통합사례회의에서 복합지원 필요 사례 논의 시 고용복지<sup>+</sup>센터·지자체·서금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 참여 확대
    - 특히, 지역 내 각종 지원기관간 협력 방안이 논의되는 시· 군·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\*에 고용복지⁺센터 참여 확대
    - \*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·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 내 협의체

## IV. **향후 일정**

○ 기관별로 차질 없이 하기 일정에 따라 복합지원 업무를 추진하고,
 '24년 말 관계기관\* 공동으로 복합지원 현황 및 성과 점검
 \* 금융위, 행안부, 복지부, 고용부, 금감원, 서금원, 신복위 등

정책 과제	시행 시기
1. 금융-고용 복합지원	-
① (旣발표 방안) 지속 이행	'24.7.~
② (신용 부채관리 컨설팅) 전산 시스템 구축	'24.10.~
2. 금융-복지 복합지원	_
① (신속 서민금융 상담) 콜센터 내 복합지원 전담 인원 추가 배치	'24 <u>.</u> 7.~
② (상호 교육 활성화) 온·오프라인 상호 교육 실시·강화	'24 <u>.</u> 7.~
③ (금융-정신건강 연계 강화)	_
ㅇ 연계 대상자 확대, 지원사업 홍보	'24 <sub>.</sub> 10.~
ㅇ 전산 연계	'25.上.~
④ (복지멤버십 안내 등 강화)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 절차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	'24.下.~
⑤ (위기가구 발굴 정보 확대)	_
ㅇ 서민금융 정보 복지부 제공 개시	'24.10.~
ㅇ 전산 연계	'25.上.~
3. 금융-기타 복합지원	_
□ 법률구조플랫폼 구축 및 금감원─서금센터 전산 연계	~'25.下.
4. 고용-복지-금융 복합지원 및 인프라 강화	_
① (고용-복지 업무 시스템 고도화) 워크플러스-행복이음 시스템 간 연계 서비스 확대	~'25.下.
② (고용-정신건강 연계 강화) 출장상담 등 제공 확대, 의뢰서 발급 및 고용지원 제도 연계	'24 <u>.</u> 7.~
③ (교육) 고용-복지 협업 교육 강화	'24.10.~
④ (교류) 기관별 사례관리 협의체 및 회의 간 교류 확대	'24.下.~